

더좋은 **청주** 행복한 시민

---

# 2026년 청주동물원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 과업지시서

---

2026. 5.

청주시  **대 변 인**  
CHEONGJU CITY

# 1. 과업명 : 2026년 청주동물원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

## 2. 과업목적

- 동물 복지 최우선 동물원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청주동물원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청주시 호감 이미지 제고
- 생생하고 고품질의 영상을 게시하여 청주시 공식 유튜브 활성화

## 3. 과업개요

- 과업대상 : 청주동물원 관련 영상 제작
- 과업기간 : 착수일 ~ 2026. 12. 31
- 사업비 : 금35,000,000원(금삼천오백만원, 부가세 포함)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발주처 : 청주시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
- 하자책임기간 : 과업 종료 후 1년(콘텐츠)
  - ※ 저작권, 초상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과업수행자가 배상 조치

## 4. 과업내용

- 청주동물원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
  - 일반 영상(가로형) 10편, Shorts 10편
  - 영상 길이는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
- 영상에 알맞은 유튜브 썸네일 제작
- 편집본 및 클린본 납품(동영상 화질 4K)
  - ※ 과업내용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## 5. 과업세부내용

### 1) 청주동물원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

- 동물원 특성상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수시로 촬영을 나와야 하며, 타 지역 출장도 가능해야 함
  - 새벽·야간 촬영 및 타 지역 출장 있음

- 청주동물원 수의사, 동물복지사와 상의하여 상시 콘텐츠 기획
  - 발주처와 청주동물원의 제작의도를 우선 반영하여야 함
- 촬영자 변경 없이 전문 담당자 지정하여 운영
  -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동물들이 경계하고 날카롭게 반응 하지만, 지속적으로 봤던 사람에 대해선 안정감을 찾고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
- 영상 특성상 빠른시간 내에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
- 총괄책임자, 제작PD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고 기획에 맞춰 진행자 등은 협의를 통해 추가 구성
- 촬영 및 녹화 장비는 UHD급 이상을 사용, 필요시 지미집, 드론 등 최신 장비 투입
- 제작에 활용할 이미지, 음원 등의 유료 구매를 통하여 콘텐츠의 완성도 보장
  - 지적재산권, 저작권 및 초상권 준수(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 책임기간 이후에도 과업수행자가 배상 조치)
- 영상 구성안을 기초로 편집과 자막, 내레이션, BGM 등 녹음을 포함하여 제작 의도에 적합한 영상 창출
- 청주동물원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
  - 일반 영상(가로형) 10편, Shorts 10편
  - 영상 길이는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
  - ※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## 2) 영상에 알맞은 유튜브 썸네일 제작

- 썸네일에 그 영상의 중점내용이 무엇인지 담길 수 있도록 하며, 썸네일 디자인이나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

### 3) 납품(과업보고) 및 유지보수

- 완성 영상은 발주처의 최종 검수를 거친 후 온라인 업로드 예정인 최소 2일 전 납품
- 모든 영상(산출물)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4K 파일로 납품
- 모든 영상물은 청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만 게시·시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처의 승인 없이 영상을 전달하거나, 타 채널(유튜브 및 모든 SNS 채널)에 게시할 수 없음
- 과업기간 중 생산되는 모든 영상물은 2종(클린본, 편집본)으로 납품
  - 단, 발주처에서 요구 시 해당 콘텐츠의 촬영 원본파일을 모두 납품하여야 함

### 4) 기타사항

- 발주처의 최종 검수를 거친 영상만 실적으로 인정
  -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 단순 재가공은 실적에서 제외(shorts 콘텐츠 미포함)
- 제작물량은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하며, 증감 조정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
- 제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출연료,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, 음원·이미지 및 영상소스 구매 등)은 발주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과업수행자가 부담
-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범위 내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 필요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1년간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해야 함

## 6. 투입인력

### 1) 유튜브 영상 제작 전문 인력 투입

- 착수일로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콘텐츠 기획·홍보 분야 전문(기술)인력을 투입한다.
-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자를 과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.
-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담팀을 지정하여 운영·관리하며 발주처(청주시)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전담팀 인력 요건

구분	기획	촬영	편집
인원	1명	2명	1명

-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가 투입한 인력별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과업에만 전념해야 한다.

### 2) 근무장소 및 시간 협의

-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(청주시)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의 효율성,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결정한다.
- 계획된 상황 이외에 갑작스럽게 상황 발생 시,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촬영 및 편집에 응해야 한다.
- 평일 근무시간 외, 공휴일에도 필요한 경우 촬영을 수행하여야 한다.

## 8. 과업 수행지침

### 1) 일반사항

-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의 지도·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술적, 기능적인 결함이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발주처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한다.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.
-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·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·소유권 및 2차저작권 등은 발주처에 귀속된다.
- 과업수행자의 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주어야 하며, 후임자는 과업사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2) 과업의 준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과업의 취득물·성과물·산출물 등을 활용할 수 없다.
- 본 과업에 활용되는 서체·이미지·사진 등 모든 요소의 활용에 있어 지식재산권(특허권·저작권·상표권 등)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하며,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직접 대응, 해결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진행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 3) 보안 부문

-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, 과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폐기한다.
- 개인정보 등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·무형의 손해배상은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외부에 공개 시 발주처의 동의하에 진행한다.

## 4) 청구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

-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과업 완료 후 지급한다.

-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  -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과업수행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 -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,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  -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
  -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-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의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손해에 대해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.

## 5) 어구의 해석 및 기타

- 계약서의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발주처의 내부규정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고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